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수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

발의연월일: 2024. 6. 27.

발 의 자: 박수영ㆍ이헌승ㆍ안상훈

백종헌 • 박덕흠 • 엄태영

서명옥 · 곽규택 · 김기현

조정훈 · 정연욱 · 조배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보조받은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여도 그 목적 이외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 미사용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있으므로,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운영비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등을 통합한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37조의2).

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의 제목 중 "양곡구입비 등의"를 "운영비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"를 "경로당 운영비(「양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용, 냉난방 비용을 포함한다)의"로 하며, 같은 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양곡구</u>	제37조의2(경로당에 대한 <u>운영비</u>
입비 등의 보조) ① 국가 또는	의 보조) ①
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	<u>경로</u>
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(「양	당 운영비(「양곡관리법」에
곡관리법」에 따른 정부관리양	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용,
곡을 포함한다)구입비의 전부	<u>냉난방 비용을 포함한다)의</u>
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	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	<u><삭 제></u>
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	
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	
보조할 수 있다.	